

지자체,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등 전국 공공발주기관에 건설교통부 공문발송

- 저가하도급방지 강력시행 요청 -



대한설비건설

협회(회장 정승일)는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공공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저가하도급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반제도개선 및 실태조사」를 선정하였다.

위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교통부, 감사원,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저가하도급방지를 위한 발주자의 조사강화 등을 건의하였다.

그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 발주기관에 저가하도급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사를 시행토록 공문요청하였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발주자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에 저가하도급방지 점검내용을 시행토록 추

진할 계획이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시 저가하도급방지방안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건설공사의 저가하도급방지를 위한 지원대책 건의내용

기계설비전문건설업체 등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원도급 수주 받은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나, 수주금액의 60%대의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경영악화에 노출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12월 26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를 개정하여 원도급자 수주금액의 82% 미만으로 하도급시에는 저가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저가하도급심사를 회피하고 있으며, 또한 발주자는 개정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발주자위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저가하도급심사제도가 아직 건설현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조속한 정착 및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의 미통보,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 전국 공공발주기관 및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에 협조요청 및 지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 통보 여부

- 1)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계약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
- 2) 기계설비공사가 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원도급자)이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나 심장 등에게 하도급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3) 하도급계약 통보시 첨부서류(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① 하도급계약서
 - ②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③ 예정공정표
 - ④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행정처분 및 벌칙내용

- ①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의무를 위반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9



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② 기계설비공사를 기계설비전문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에 하도급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 부과
- ③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한 무자격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하도급금액 적정성 여부

발주자에게 통보한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이 수급인이 도급 받은 금액의 82% 미만으로 하도급 여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2항,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건교부 훈령 2003-5, 2003년 1월 11일)

※ 참고사항

- ①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
- ②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해지

□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 1) 저가하도급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계약서와 실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명목계약서는 하도급통보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로 저가하도급으로의 계약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
- 2) 기성대가 지급시 하도급금액의 입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하도급계약 대로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참고사항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허위로 통지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

